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재원) 본 회의 재원은 다음과 같은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5월 1일부터 익년도 4월 30일까지로 정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3. (생 략) 4. <u>기타수입</u> 	<p>제6조(재원) -----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그 밖의 수입</u>
<p>제8조(사업) 본 회의는 제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회원에 대한 상조비 지급 2. 회원을 위한 후생사업 3. <u>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 	<p>제8조(사업)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----- 2 ----- 3. <u>그 밖에 총회의 의결로 인정하는 사항</u>
<p>제9조(상조비 지급) ① <u>제8조 제1호에 의한</u> 상조비 지급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· 2. (생 략) 3. 사 망 본인 및 배우자 : 1,000,000원과 <u>조기(조화)</u> 자녀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: 500,000원과 <u>조기(조화)</u> 4. 병 고 단, 본인은 횡수제한 없이 지급하고, 배우자, 자녀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는 <u>연1회(회계년도 기준)</u>에 한하며, 입원비가 100만원 이상일 경우 입원기간이 2주 미만이라도 상조비를 동일하게 지급한다. 5. (생 략) <p>② (생 략) ③ (생 략) <u><신 설></u></p>	<p>제9조(상조비 지급) ① <u>제8조제1호에 따른</u>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·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-- <u>조화</u> ----- <u>조화</u> 4. ----- ----- ----- <u>연1회</u> ----- -----. 5. (현행과 같음) <p>②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상조비는 매 월 둘째, 넷째 금요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</u></p>
<p>제11조(대부) <u>본 회의 회비 적립금이 일정액 이상을 초과하면</u> 회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, 대부상환액은 10년 이상 근무자는 5,000,000원, 10년 미만 근무자는 3,000,000원 이내로 이자율은 월 0.4%로 한다. <u><단서 신설></u></p>	<p>제11조(대부) <u>본 회의 회비 적립금 총액의 50%를 상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<u>단, 1년 미만 근무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.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조(송별금 지급)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송별금을 지급하되, 10년 이상 근무자는 200,000원, 20년 이상 근무자는 400,000원, 30년 이상 근무자는 600,000원의 근속가산금을 추가하여 지급한다.</p> <p>근속연수 × 30,000원 (단, 산출단위는 6월이상으로 한다.)</p> <p><신 설></p>	<p>제12조(송별금 지급) ① 제5조에 따라 회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송별금 {(근속연수×30,000원)+근속가산금}을 지급하며, 근속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. 단, 3년 미만 근무자는 근속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(산출단위는 6월이상으로 한다.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3년 이상 5년 미만 근무자 : 50,000원 2. 5년 이상 근무자 : 100,000원 3. 10년 이상 근무자 : 200,000원 4. 15년 이상 근무자 : 300,000원 5. 20년 이상 근무자 : 400,000원 6. 25년 이상 근무자 : 500,000원 7. 30년 이상 근무자 : 600,000원 <p>② 근속연수는 상조회에 입회비를 납부한 최초가입 시점부터 제5조의 자격상실일까지로 계산하며, 무급휴직 등으로 상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.</p>
<p>제13조(위로금지급) ① 7년동안 제9조(상조비지급)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위로금 100,000원을 지급한다.</p> <p>② 지급기준은 연도를 기준하며 상조비 지급이 이루어진 익년도 부터 기산하여 7년이 도달한 해의 5월에 지급한다.</p>	<p>제13조(미수혜정산금 지급) ① 5년 동안 제9조제1항 ----- --자에게는 미수혜정산금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5년-----.</p>
<p>제14조(총회의 기능)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 기구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 략) 2. 규약 <u>개폐</u>에 관한 사항 3. (생 략) 4. <u>기타</u>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	<p>제14조(총회의 기능) -----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--- <u>개정 및 폐지</u>--- 3. (현행과 같음) 4. <u>그 밖에</u> -----
<p>제17조(임원) ① 본 회의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회 장 1인 2. 부 회 장 1인 3. 감 사 2인 4. 간 사 1인 <p>② (생 략)</p>	<p>제17조(임원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----- 1명 2. ----- 1명 3. ----- 2명 4. ----- 1명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③ 본 회의 회장은 <u>교학처장</u>, 부회장은 총무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,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정리하고, 부회장은 회장을 보조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④ 삭제</p> <p>⑤ ~ ⑦ (생략)</p>	<p>③ ----- <u>교무처장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⑤ ~ ⑦ (현행과 같음)</p>
<p><u>제19조(경과조치) ① 이 규약 시행후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조비 지급이 본회 재정상으로 전액 지급할 수 없는 경우는 부족액이 충당하도록 회원 봉급에서 균등한 비율로 각출한다.</u></p> <p><u>②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직 기간은 본 규약 시행일로부터 계산한다.</u></p>	<p><u>제19조(경과조치) 이 규약 시행 후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상조비 지급이 본회 재정상으로 전액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원 봉급에서 균등한 비율로 각출하여 부족액을 충당한다.</u></p> <p><삭제></p>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이 규약은 2020.12.30.부터 시행한다.</p>